**낙서 피해에 대한 내용증명**

발신인 법인명: 해율 주식회사 (학원명: 해율국악학원)

대표이사: 김해인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225, 405-1호

전화번호: 010-5347-4493

수신인 학교명: 대도초등학교

학생명: 5학년 김시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09

전화번호: 02-3463-5377

**제목: 낙서 피해에 대한 내용증명 건**

1. 귀학교(수신인, 이하 ‘귀사’라고 한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선 당사에서는 귀학교의 학생의 학부모님과 하기 사건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상기 학생 학무모님의 배상 거부로 인하여

부득이 귀학교로 내용 증명을 보낼 수 밖에 없음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당사는 아래와 같이 목적물 도곡렉슬상가 405-1호와 405-2호에 대한 3차례의 낙서로

인하여 목적물 외벽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이에 하기와 같은 법적인 조치를 엄중

히 통보합니다.

1. 귀학교 5학년 김시우 학생은 2022년 11월 9일 오후 4시 14분 경부터 당사 벽면에 3 차례에 걸쳐 다양한 위치에 낙서를 하였습니다.
2. 당사에서는 이에 학원 벽면에 공지를 내어 걸었으며, 김시우 학생의 부모님 연락처를 확보한 후에 여러 차례 배상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하지만 김시우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벽면에 낙서한 모든 아이를 다 찾아서 비용을

나누어 부담을 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CCTV 촬영은 명예훼손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

3. 이로 인하여 본 발신인은 김시우 학생 및 부모님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손해

뿐만이 아니라, 대응을 위한 법적 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발생하였는 바, 본 발신인에

대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적인 비용 및 배상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

다.

4.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사에게 원상복구 비용 뿐만 아니라 법적인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청드리며, 만일 김시우 학생의 부모님께서 30일 이내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발신인은 귀사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

전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 등의 조치를 할 것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

합니다. 이 경우, 귀사는 본 발신인의 민사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며, 특히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5. 본 발신인은 김시우 학생의 부모님에게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

하게 해결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별첨: CCTV 촬영본]

텍스트, 실외, 표지판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2023년 01월 03일

위 발신인

해율주식회사

김해인 (인)